

「광산업 관련 관세감면 제도」

김태훈 / 한국광산업진흥회 사업팀 과장

관세법에서는 재정수입과 국내산업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감면제도는 관세율표상 세액이 부과되는 경우로서 산업, 사회, 문화 등의 정책 등 국가시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해진 세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무세는 관세율표상 세액이 0%인 것으로 관세감면 신청이 없더라도 납부하여야 할 관세가 없는 반면에, 관세감면은 관세율표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대하여 특정한 경우에 해당되고 수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관세액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무세와 감면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관세감면은 관세법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항공협정 등에도 별도로 관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감면의 특징을 보면 우선 사전 신청주의 원칙을 들 수 있다.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세관장에게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감면 물품이라 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최종수혜자 원칙을 들 수 있다. 즉, 법령에 정하고 있는 수입주체 이외의 자는 관세감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수입통관 된 물품을 통관후에 관세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납품하여 관세감면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신고시의 주체가 관세감면규정상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면 관세감면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현재 광관련 시장이 매우 침체에 있으며 관련업체 또한 생산제품의 원가인하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 및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관심만 갖는다면 쉽게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관세 감면 제도를 적극 이

용하여 원가절감에 따른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러한 관세감면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업체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현재 광관련 업체에서 수혜 가능한 감면 내용을 정리하였다.

1. 공장자동화기기(환경오염물품 등) 관세감면

가. 관련법령 : 관세법 제95조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4.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나.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은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임.

다. 또한 반도체용 장비와 동일한 장비가 수입되더라도 광산업에 사용되는 장비는 동 품목에 포함되어야 신속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양허관세에 의한 관세감면 참조)

라. 2003년도부터 적용되는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품목에 대해서도 26건의 광제품 제조용 장비 및 광

장비의 포함을 건의하여 반영됨에 따라 기본세율 대비 40~50%수준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마. 감면품목 결정 절차

- ① 소관부처(산업자원부 등)의 수요조사 실시(전년 4월)
- ② 소관단체(한국광산업진흥회 등)의 수요조사 실시(전년 4월)
- ③ 소관단체의 수요조사 품목 제출(소관부처로, 전년 6월)
- ④ 소관부처 자체 검토 및 최종안 확정(전년 7월)
- ⑤ 소관부처의 수요조사 품목 제출(재경부로, 전년 8월)
- ⑥ 재경부의 최종 검토(전년 11월까지)
- ⑦ 재경부 최종 품목 고시(전년 12월)
- ⑧ 감면추진(당해년도)

2. 할당관세에 의한 관세감면

가. 관련법령 : 관세법 제71조

제71조 (할당관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할당관세는 물자의 수급조절·가격안정과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40%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감하거나 가산하여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탄력관세제도.

다. 국내 물자가 부족하거나 가격이 너무 비쌀 경우 관련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내려주는 제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이나 수입수량을 「할당」해 그만큼만 관세인하의 혜택을 부여. 국내 광산업체에서 생산하는 광관련 소재의 소재 및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라. 2003년도부터 적용되는 제조업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광부품제조원료인 산화지르코늄이 포함됨에 따라 4%로 수입관세가 인하되어 연간 수입물량 100톤 기준으로 400백만원의 할당관세인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마. 감면품목 결정 절차

- ① 소관부처(산업자원부 등)의 수요조사실시(전년9월)
- ② 소관단체(한국광산업진흥회 등)의 수요조사실시(전년9월)
- ③ 소관단체의 수요조사품목 제출(소관부처로, 전년10월)
- ④ 소관부처 자체 검토 및 최종안 확정(전년10월)
- ⑤ 소관부처의 수요조사품목 제출(재정부로, 전년10월)
- ⑥ 재정부의 최종 검토(전년11월까지)
- ⑦ 재정부 최종 품목고시(전년12월)
- ⑧ 감면추진(당해년도)

3.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가. 관련법령 : 관세법 제90조 제1항 5호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이란 국내 광관련 업체(기업부설연구소 등)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 국내 광관련 업체에서 광관련 제품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장비에만 적용되며 동 장비를 향후 생산용 장비로 사용할 경우 관세부과가 이루어 짐.

다. 감면품목 결정 절차

- ① 소관부처(산업자원부 등)의 수요조사실시(2월)
- ② 소관단체(한국광산업진흥회 등)의 수요조사실시(2월)
- ③ 소관단체의 수요조사품목 제출(소관부처로, 전년4월)
- ④ 소관부처 자체 검토 및 최종안 확정(4월)
- ⑤ 소관부처의 수요조사품목 제출(재정부로, 4월)
- ⑥ 재정부의 최종 검토(5월까지)
- ⑦ 재정부 최종 품목고시(6월)
- ⑧ 감면추진(당해년도 7월부터 익년 6월까지)

4. 양허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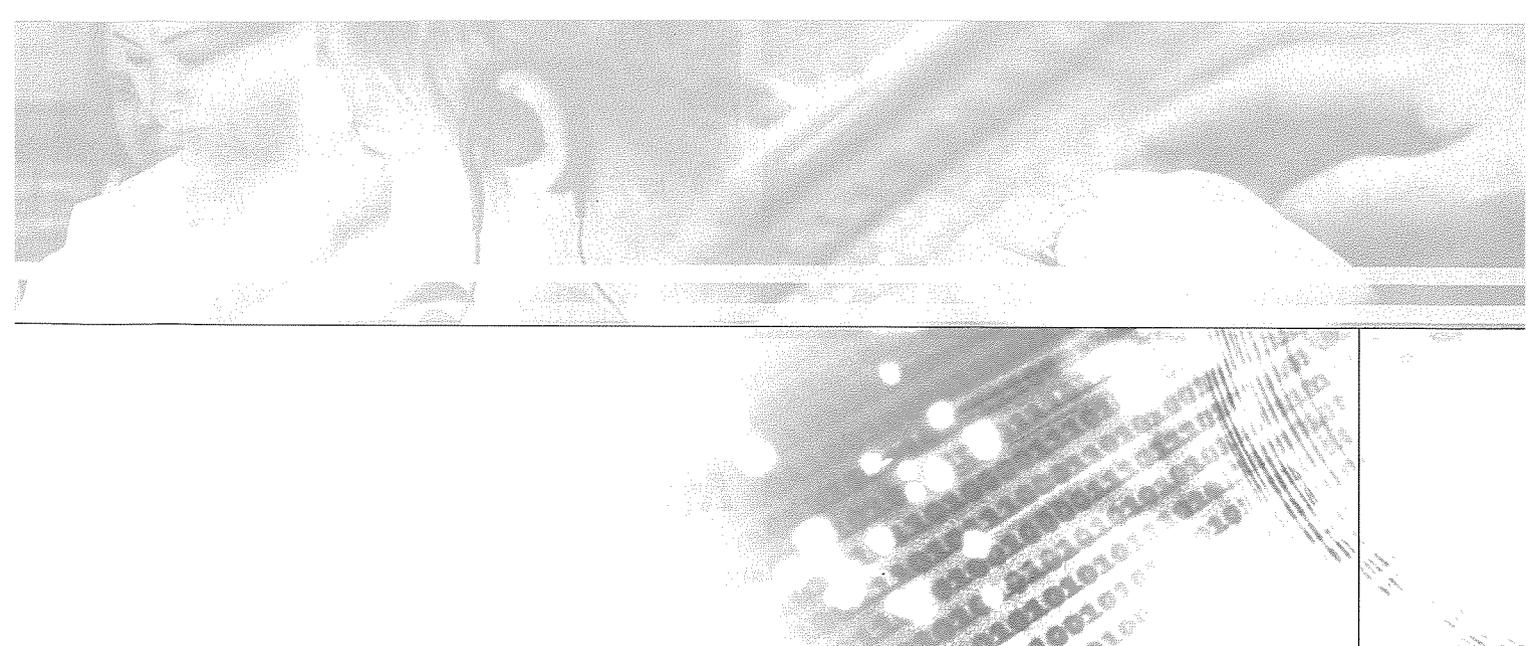
가. 관련법령 : 관세법 제73조

제73조 (국제협력관세)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양허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의한 일반양허관세와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가 있으며 이외 국가간의 협정을 통하여 양국간의 수출입 품목에 적용

다. 현재 정보통신 제품 및 부품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의거 양허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용 장비 또한 양허관세가 적용.

라. 현재 광관련 업체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활용하여 다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는 수입 시 광부품제조용으로 수입되고 있어 양허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즉 동일한 장비를 반도체 제조용으로 수입할 경우는 양허세율이 적용되거나 광부품 제조용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기본관세가 부



과된다. 따라서 다른 세율감면 제도와 연계하여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임.

마. 감면품목 결정 절차

- 동 감면은 국제협정에 의한 감면으로 국제협상이 개시될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함
- 지난해 11월 WTO 도하아젠다에 의한 다자간 무역 협상이 현재 진행 중임

- ① 소관부처(산업자원부)의 관세율 인하 요청안 (관심국가 및 관심품목의 선정) 작성 개시
- ② 소관단체(한국광산업진흥회 등)의 수요조사 실시
- ③ 소관단체의 수요조사품목 및 평가보고서 제출 (소관부처로)
- ④ 소관부처 관심품목 자체 검토 및 관심국가별 최종안 확정
- ⑤ Request List 작성
- ⑥ 협상개시

- ⑦ 협상 타결시 양허세 적용, 미 타결 시 현행 유지
- ⑧ 감면추진(차기 무역협상 시 까지)

